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36

발의연월일: 2025. 2. 10.

발 의 자:서지영·조정훈·박형수

서일준 • 이인선 • 김용태

이헌승 · 서천호 · 곽규택

박충권 · 김승수 · 이종배

고동진 · 김대식 · 조경태

김선교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, 그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19세 미만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따 로 존재하므로 현행법의 체계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임.

이에 13세 미만 아동·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로 옮기는 등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(제7조 삭제 및 안 제8조제1항, 제9조, 제15조의2, 제21조제3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03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를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 중 "제6조, 제7조 또는 제15조"를 "제6조 또는 제15조"로, "제4조,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"을 "제4조 또는 제6조의 미수범" 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"제7조까지, 제15조"를 "제6조까지, 제15조"로, "제7조까지의"를 "제6조까지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6조, 제7조 또는"을 "제6조 또는"으로, "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"을 "제6조의 미수범"으로 한다.

제15조의2 중 "제7조"를 "제6조"로 한다.

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"을 "신체적인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6조제2항, 제7조제2항 및 제5항, 제8조"를 "제6조제2항, 제8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_	개	정	안	
제7조(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	<u><</u> 삭	제>			
<u>대한 강간, 강제추행 등) ① 13</u>					
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「형					
법」 제297조(강간)의 죄를 범					
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					
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					
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					
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				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					
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					
<u> 징역에 처한다.</u>					
<u>1. 구강・항문 등 신체(성기는</u>					
제외한다)의 내부에 성기를					
넣는 행위					
2. 성기·항문에 손가락 등 신					
체(성기는 제외한다)의 일부					
나 도구를 넣는 행위					
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					
「형법」 제298조(강제추행)의					
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					
유기징역에 처한다.					
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					
「형법」 제299조(준강간, 준강					

제추행)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.

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 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.

제8조(강간 등 상해·치상) ① 제 3조제1항, 제4조, 제6조, 제7조 또는 제15조(제3조제1항, 제4조,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를 범한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② (생략)

제9조(강간 등 살인·치사) ① 제 3조부터 제7조까지, 제15조(제3 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 또는 「형법」 제297조(강간), 제297조의 2(유사강간) 및 제298조(강제추행)부터 제300조(미수범)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

제8조(강간 등 상해·치상) ①
제6조 또
<u>는 제15조</u> (<u>제4조</u>
또는 제6조의 미수범
<u>.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강간 등 살인·치사) ①
제6조까지, 제15조
제6조까지의

징역에 처한다. ② (생 략) ③ <u>제6조, 제7</u>

③ 제6조, 제7조 또는 제15조 (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,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제15조의2(예비, 음모) 제3조부터 <u>제7조</u>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제21조(공소시효에 관한 특례) ① ·② (생 략)

-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 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형사소송법」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「군사법원법」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(생략)
- 2. 제6조제2항, 제7조제2항 및 2. 제6조제2항, 제8조

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제6조 또는</u>
- <u>제6</u> 조의 미수범
제15조의2(예비, 음모)
<u>제6조</u>
제21조(공소시효에 관한 특례) ①
제21조(공소시효에 관한 특례) ① ·② (현행과 같음)
• ② (현행과 같음)
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신체적인</u>

<u>제5항, 제8조</u> , 제9조의 죄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